『기독교사회윤리』 제51집
(2021) 9~35

디트리히 본회퍼의 시민적 용기의 개념과 법윤리적 함의

김성수(서울신학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시민적 용기의 개념

III. 시민적 용기의 신학적 이해
1. 시민적 용기의 형식적 규정
2. 시민적 용기의 내용적 규정

IV. 시민적 용기와 법윤리적 노력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1.01

www.kci.go.kr

• ABSTRACT •

The Concept and Legal Ethical Implications of Dietrich Bonhoeffer's Civil Courage

Sungsoo Kim(Lecture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cept of civil courage of Dietrich Bonhoeffer and to show its legal, ethical implications. For Bonhoeffer, this term means an attitude that is resistant to authority and the realization of free responsibility. On this basis, he focused on political resistance. At the same time, criticism of the law and concrete action for its improvement was attempted. Bonhoeffer's theories and movements provide a perspective that civil courage must be implemented in the political and legal fields. Bonhoeffer's approach explains the theological basis of civil courage and establishes the criterion and orientation for theological, legal ethics. The implementation of the Christian based on his idea can promote the realization of civil courage in society and the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Key words: Dietrich Bonhoeffer, Citizenship, Civil Courage, Social Ethics, Legal Ethics, Responsibility

www.kci.go.kr

I. 들어가는 말

시민성(Bürgerlichkeit)은 근대 시민 계급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시민이 가지고 있는 덕이라는 기술적 의미를 가진 시민성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채로운 형태를 나타내었다.[1] 그래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시민의 덕이 조명을 받았다. 근대 초기에는 경제적 자유의 요구가 시민성과 결합되었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정치적 관심과 참여에 대한 열망이 이 개념 안에 투영되었다.[2] 19세기 이후 민족주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것이 심화된 형태인 동화주의, 20세기 중후반부터 배타적 시민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부각된 다문화주의, 21세기 이후 지구화의 영향 속에서 세계시민주의에 기초한 시민성이 많은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3] 시민성은 정치 권력 혹은 시민에 의해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강조되었다. 이는 시민성의 함양이 현존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의 구현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시민성은 기술적 의미뿐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해 시민이 가져야 할 덕이라는 규범적 의미를 지니며 발전되었다.[4]

규범적 차원의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 안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 사회는 시민의 참여에 근간을 두고 있는 시민 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색되어야 할 시민의 덕은 시

---

1) Joachim von Soosten, "Bürgertum, Bürgergesellschaft,"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Kohlhammer, 2001), 226.

2) Sandra Seubert, "Zivilcourage als politische Tugend der Bürgergesellschaft," Gerd Meyer (Hg.), *Zivilcourage lernen. Analysen - Modelle - Arbeitshilfen* (Bonn: BPB, 2004), 43.

3) 박선영, 목광수, 김승환, 성신형, "시민성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이해 분석과 기독교사회윤리적 답변," 「기독교사회윤리」48(2021), 66-67.

4) 위의 책, 65.

www.kci.go.kr

민 사회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적 용기는 시민의 공론장 참여와 정치적 행동을 증진함으로써 시민 사회의 성숙에 기여하는 시민의 덕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안정화에도 공헌하게 되는 시민적 용기는 그 긍정적 기능 때문에 한국 사회 안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도 이 시민성의 확산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개선에 기여해야 할 공적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5] 그리스도인이 시민적 용기를 수용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은 이 개념에 대한 신학적 근거가 분명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시민적 용기의 신학적 토대와 중요성을 선구적으로 주제화하였다. 그는 이 구상을 실제 행동으로 구현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치와 함께 법을 시민적 용기가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본회퍼의 기획은 이 개념과 관련된 신학적 체계의 구축과 법윤리적 인식의 확장에 큰 도움을 준다. 이를 기초로 그리스도인은 시민적 용기의 수용과 법을 위한 노력에 힘씀으로써 시민 사회에 필요한 시민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주주의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본회퍼의 시민적 용기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법윤리적 함의를 발견하여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적 용기의 발전 과정과 현대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와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본회퍼의 개념 규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민적 용기에 기초한 그의 법윤리적 노력의 유형과 특징을 고찰하고, 이로부터 법치주의의 강화에

5) 김성수, “공적 교회의 개념과 책임적 과제 - 볼프강 후버의 교회론 연구,” 「신학사상」 185(2019), 158-162.

www.kci.go.kr

기여하는 법윤리적 판단 기준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시민적 용기의 개념

용기(andreia)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단어다. 당시 이것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탁월성을 의미했던 덕(arete)의 하나로 이해되었지만, 그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소크라테스도 덕을 지식과 연결하여 논의하였지만, 용기의 본성을 설명하는 작업을 난제로 간주하기도 하였다.[6] 이후 용기는 덕을 윤리적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주제화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비로소 개념화될 수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덕은 윤리적 행위를 위한 성품이자 소질이다.[7] 유덕하면 선한 행위를 실천에 옮기며, 좋은 삶을 추구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성적 덕과 함께 덕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윤리적 덕은 습관과 반복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것으로서 부족함과 과도함을 지양하는 중용(mesotes)의 태도를 말한다. 절제, 정의와 함께 윤리적 덕에 속하는 용기는 지나친 두려움으로 인해 도피적 태도를 보이는 비겁과 지나친 대담함으로 인해 분별없는 태도를 보이는 무모 사이의 중용에 해당한다.[8] 용기는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고, 적절한 수준의 대담함을 유지하는 내적 상태인 것이다. 이 유덕한 상태는 고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통이나 죽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내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다.[9] 그런 점에서 용기는 부정적 결과를 감수한 채 옳고, 선한 목표를 추구하는 태도라는 함의를

6) Plato, *Laches*, 한경자 역, 『라케스』 (서울: 이제이북스, 2014), 83.
7)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2008), 62.
8) 위의 책, 103-104.
9) 위의 책, 44.

www.kci.go.kr

지닌다.

그런데 용기 있는 행동이 지향하고 있는 고귀한 목적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사적인 것이다. 심지어 이 행동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윤리적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실행되기도 한다.[10] 용기 있는 행동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공동체에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적 동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행위자만이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용기는 사적 용기의 성격을 지닌 개인적 차원의 덕에 해당한다.

근대적 개념인 시민적 용기는 부정적 결과를 감수한 채 옳고, 선한 목표를 추구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용기 개념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적 이익에 중점을 둔 공적 용기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부르주아 계급(bourgeois)은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자본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경제적 시민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이 계급의 관심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공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적 시민(citoyen)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1835년 이후 프랑스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할 용기(courage civil)와 국가 시민의 용기(courage civilique)의 의미가 결합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시민적 용기(Civil Courage)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시민의 덕을 뜻하였다.[11] 그래서 이 개념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공적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의 태도로 이해되었다.

여기서 복종의 거부는 다수 의견에 굴복하지 않고, 공적 이익과 관련된 옳고, 선한 목표를 추구하는 태도를 함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1847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시민적 용기를 언급한 프로이센 수상 오토 폰 비스마

---

10) 위의 책, 105.

11) Gerd Meyer, "Was heiβt mit Zivilcourage handeln?," Ders., (Hg.), *Zivilcourage lernen. Analysen - Modelle - Arbeitshilfen* (Bonn: BPB, 2004), 22.

www.kci.go.kr

르크(Otto von Bismarck)는 이 개념을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결부하여 사용하였다.[12] 그러나 독일 사회에서 시민적 용기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권위에 대한 저항 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던 권위에 대한 복종 의식과 상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종 의식의 공고화에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정치 권력과 직업 이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13] 정치 권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역으로서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보호할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직업(Beruf)은 다양한 권위 관계를 존중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Berufung)의 장소라는 신학적 설명이 정치 권력과 권위 관계에 대한 저항 의식을 약화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 결과 독일 사회에서는 정치적 시민의 역할 대신 오직 경제적 시민의 삶만이 관심 대상으로 여겨졌다.[14] 이러한 차원에서 근면, 청결, 정확 등 경제 활동과 관련된 시민의 덕이 강조된 반면, 이에 포함되지 못한 시민적 용기는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지 못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도 유지되었던 이러한 경향은 나치 정권이 들어선 뒤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15]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시민적 용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적 용기는 시민 사회가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그 결과 이 개념은 시민의 공론장 참여와 정치적 행동을 촉진하여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사회

12) Christine Schliesser, "Zivilcourage - ein theologischer Begriff?," *ZEE* 62(2018), 90.

13)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478.

14) Wolfgang Huber, *Kirche in der Zeitenwende. Gesellschaftlicher Wandel und Erneuerung der Kirche* (Gütersloh: Verlag Bertelsmann Stiftung, 1999), 272.

15) Änne Ostermann, "Zivilcourage und Demokratie," Gerd Meyer (Hg.), *Zivilcourage lernen. Analysen - Modelle - Arbeitshilfen* (Bonn: BPB, 2004), 54.

www.kci.go.kr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시민의 덕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적 용기는 다양한 층위와 맥락의 구체적 행동과 연결되어 논의되었다. 특히 불의한 정책의 개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위반하고, 처벌을 감수하는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시민적 용기가 구체화된 전략적 행동으로 인식되었다.[16] 1990년대 이후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맞서는 윤리적 태도로 강조되고 있기도 한 시민적 용기는 현재 개념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감수한 채 권위와 다수 의견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옳고, 선한 공적 목표를 추구하는 시민의 덕으로 이해되고 있다.[17] 이것은 인간 존엄성과 인권 침해의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불의를 극복하려는 목표를 가진 공적 용기로서 비폭력을 지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18] 이러한 개념화가 이뤄지기 전인 나치 시대의 신학자였던 본회퍼는 현대적 의미의 시민적 용기와 연결점을 지닌 신학적 차원의 시민적 용기를 선구적으로 주제화하였다.

III. 시민적 용기의 신학적 이해

1. 시민적 용기의 형식적 규정

본회퍼가 시민적 용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시대 경험과 결부되어 있다. 1555년부터 정치 권력의 합법적인 간섭을 받아왔던 독일 개신교회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설립된 1918년에 그 조직과 기구에 대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자유는 1933년 나치 정권이 주도하는 제국교회로의 통합

16) John Rawls, *Eine Theorie der Gerechtigkeit* (Frankfurt a. M.: Suhrkamp, 2014), 399-405, Jürgen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Frankfurt a. M.: Suhrkamp, 1994), 463-464.

17) Sandra Seubert, “Zivilcourage als politische Tugend der Bürgergesellschaft,” 42.

18) Änne Ostermann, “Zivilcourage und Demokratie,” 56.

www.kci.go.kr

시도와 유대계 혈통을 공직과 교회에서 배제하는 법률인 아리안 조항(Arierpharagraph)을 통해 큰 위협을 받았다. 1934년 조직된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는 유대인 문제의 해결보다 교회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전체주의적 정책을 일시적으로 막아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19] 하지만 나치 정권의 제재와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1938년 이후 고백교회 목회자들의 징집과 히틀러에 대한 충성 서약 요구가 제도화되면서 교회의 저항은 점차 약화되었다.

고백교회 활동에 초기부터 참여했던 본회퍼도 교회 투쟁이 위기를 겪고, 군복무의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9년 6월 뉴욕을 방문한 그는 미국에 남아 생활할 수 있는 강의 기회와 독일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직을 제안 받았지만, 독일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3주 만에 귀국하였다.[20] 이후 본회퍼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본격적으로 가담하였고, 1940년 초반부터 이 결단과 결부된 신학적 기획들을 담은 『윤리학』(Ethik) 단편들을 집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회퍼는 1942년 말 『10년 후』(Nach zehn Jahren)라는 제목의 단편을 작성하였다. 이 글은 나치 정권이 출범한 10년 후인 1943년을 앞둔 시점의 그의 신학적 구상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본회퍼는 나치 정권을 악(Böse)으로 규정하였다.[21] 그런데 이 악은 선의 가면을 쓰고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윤리적 판단과 행동이 쉽지

---

19) 본회퍼는 동시대의 신학자나 목회자와 다르게 유대인 문제의 극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Wolfgang Huber, *Folgen christlicher Freiheit. Ethik und Theorie der Kirche im Horizont der Barmer Theologischen Erklärung*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85), 71.

20) Traugott Jähnichen, "Freie Verantwortlichkeit und Zivilcourage," Ders., (Hg.), *Dietrich Bonhoeffer - Stationen und Motive auf dem Weg in den politischen Widerstand* (Münster: LIT, 2005), 93-94.

21) Dietrich Bonhoeffer, DBW 8. *Widerstand und Ergebung. Briefe und Aufzeichnungen aus der Haf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8), 20.

www.kci.go.kr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이성, 윤리적 원칙, 양심, 의무, 자유에 근거하여 악에 순응하는 일이 만연하였고, 악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적 차원의 덕만을 추구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22]

본회퍼는 이러한 윤리적 개념들을 최종 근거로 삼아 악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적합한 행위를 숙고하고,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른 행위는 악에 대한 저항이다. 그런데 그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상태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회퍼는 시민적 용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에게 시민적 용기는 개인의 덕이지만, 본질적으로 공적 이익을 지향하는 공적 차원의 덕을 의미한다.[23] 본회퍼는 이것이 독일 사회에서 지금껏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그 근본 원인을 사회에 고착화되어 있는 권위에 대한 복종 의식에서 찾았다.

> "우리 독일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복종의 필요성과 힘을 배워야만 하였다... 독일인이 복종, 지시, 직업 속에서 최선을 다해 용기와 헌신을 다한 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나 독일인은 복종을 위한 준비와 지시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악을 위해 오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였다."[24]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치 권력과 직업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독일 사회의 권위에 대한 복종 의식을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질서 인식과 그에 대한 복종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본회퍼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신학적으로 정당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

22) 위의 책, 21-22.

23) Ernst Feil, "Zivilcourage nach Dietrich Bonhoeffer - eine Aufgabe der Individualethik?," Ders., (Hg.), *Zivilcourage und demokratische Kultur* (Münster: LIT, 2002), 19.

24) Dietrich Bonhoeffer, DBW 8. *Widerstand und Ergebung,* 23-24.

www.kci.go.kr

이것이 악이 만연하고, 일상화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25] 그런 점에서 본회퍼에게 시민적 용기는 일차적으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26] 옳고, 선한 공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인 것이다.[27]

2. 시민적 용기의 내용적 규정

본회퍼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민적 용기를 자유로운 책임(freie Verantwortung)을 실현하는 태도로 정식화하였다.[28] 그래서 시민적 용기의 의미를 『10년 후』이전 집필된 단편인 『역사와 선』(Die Geschichte und das Gute) 제2판에 설명된 책임 개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책임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에 의해 주목 받게 된 개념이다. 베버는 특정 원칙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는 심정 윤리(Gesinnungsethik)가 근대 정치 상황에서 영향력을 갖기 힘들다고 보았다. 비폭력을 강조하는 산상설교와 같은 종교적 원칙과 이에 따른 의무론적 판단이 현실성을 지니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베버는 특정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중요시하는 책임 윤리가 근대 사회에 적합한 윤리적

---

25) 본회퍼는 세상의 권위 관계가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사안에 따라 권위에 저항하는 책임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회퍼는 상층부와 하층부라는 권위 관계를 기초로 위임론(Mandatenlehre)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Dietrich Bonhoeffer, DBW 6. *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2), 287, 395-396.

26) Dietrich Bonhoeffer, DBW 8. *Widerstand und Ergebung,* 24.

27) 성서에서 용기는 담대함 혹은 솔직함(Parrhesie)으로 묘사되어 있다(행 4:13, 29, 31, 28:31, 엡 3:12, 6:20).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토대로 담대하고, 솔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Christofer Frey, *Wege zu einer evangelischen Ethik. Eine Grundlegung*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2014), 334.

28) Dietrich Bonhoeffer, DBW 8. *Widerstand und Ergebung,* 24.

www.kci.go.kr

판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9] 하지만 본회퍼는 근대성에 기초하고, 목적론적 사고에 중점을 둔 베버의 기획을 불완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신학적 접근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30] 그래서 책임을 인간의 사회성을 존중하는 신학적 개념으로 재정립한 그는 이를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와 동료 인간을 위한 행위로 구조화하여 설명하였다.

책임은 본래 중세시대 이전부터 법정 용어로 사용된 개념이다. 이는 재판장이 특정 행위로 인한 잘못을 따져 묻고, 죄인이 그에 대해 해명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교 전통의 책임 개념도 해명의 의무와 관계되어 있다. 최종 심판에 대한 비유(마 25:31-46)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작위 혹은 부작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31] 본회퍼는 이 연장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시고, 그리스도인은 이에 순종해야 한다.[32] 이후 그리스도인은 순종 여부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해명해야 한다. 순종의 행위는 주어진 말씀에 대한 적합한 반응이다. 이에 따라 본회퍼는 책임(Verantwortung)을 하나님 앞에서의 해명의 의무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응답(Antwort)의 행위로 파악하였다.[33] 말씀에 부합하는 윤리적 과제를 수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은 동료 인간을 위한 행위로 구체화된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리 행위

---

29) Max Weber, "Politik als Beruf," Ders.,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Tübingen: Mohr Siebeck, 1958), 539-540.

30) Dietrich Bonhoeffer, DBW 6. *Ethik*, 254.

31) Wolfgang Huber, *Von der Freiheit. Perspektive für eine solidarische Welt* (München: C. H. Beck, 2012), 85.

32) Dietrich Bonhoeffer, DBW 6. *Ethik*, 253.

33) 위의 책, 254.

www.kci.go.kr

(Stellvertretung)를 본받아 자기를 포기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발적 의지로 이를 실천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대리 행위가 가능해진다.[34] 이러한 측면에서 본회퍼는 인간의 대리 행위가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은혜의 경험을 기초로 상호 섬김과 중보기도 등의 대리 행위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35]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 동료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대신하고, 그의 행복과 복지에 도움을 줌으로써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36] 그런 점에서 대리 행위의 실현은 동료 인간을 위한 책임적 행동의 근본 원칙에 해당한다.

본회퍼는 대리 행위가 현실적합성(Wirklichkeitsgemäßheit)의 기반 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을 통해 세상과 화해하셨다. 이 화해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현실이 세상의 현실에 들어왔고, 세상의 현실은 하나의 화해된 현실이 되었다.[37] 거룩하고, 초자연적인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인 세상적인 것 안에 위치함으로써 두 영역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병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세상적인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것과 동일시되거나 일치될 수 없다. 세상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궁극 이전의 것(Vorletztes)으로서 상대적이고, 임시적이다. 세상적인 것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것(Letztes)인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그리스도교적인 것과 질적 차이를

34) 대리는 본회퍼의 박사학위논문에서 교회의 사회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이후 이 개념은 그의 윤리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으로 기능하였다. 책임과 시민적 용기도 대리 개념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Dietrich Bonhoeffer, DBW 1.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86), 99.

35) 위의 책, 121.

36) 강성영, "디트리히 본회퍼의 타자의 윤리의 신학적 토대와 오늘의 의미," 「신학연구」 76(2020), 113.

37) Dietrich Bonhoeffer, DBW 6. *Ethik*, 39.

www.kci.go.kr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견제와 비판을 받고, 교정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38] 그러나 궁극적인 것의 의미를 명료하게 해주는 역할 때문에 궁극 이전의 것은 고유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39] 그리스도교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거룩하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해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세상적인 것은 경시될 수 없는 위상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본회퍼는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가지고 있는 변증법적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세상적인 것의 고유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복음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40]

이러한 측면에서 본회퍼에게 현실적합적 행위는 세상의 논리 체계를 존중하는 행동을 뜻한다. 이는 세상의 각 영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법칙과 이성적 구조에 기초하는 사실 적합성(Sachgemäßheit)을 인정하는 것이다.[41] 그러나 동시에 이 사실의 체계와 법칙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정상적, 비이성적 행위도 사안에 따라 현실적합적 행위가 될 수 있다. 폭력의 사용도 경우에 따라 상황에 적합한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42] 그래서 현실에 적합한 책임적 행위란 세상의 논리 체계를 존중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특정 상황에 필요한 구체적 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43]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한 행동을 선택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 필요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을 숙고하는 과정이 책임적 행동을 위해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38) 위의 책, 45.
39) 위의 책, 152.
40) Hans-Richard Reuter, "Vom christlichen Pazifismus zum aktiven Widerstand. Dietrich Bonhoeffers (Denk-)Weg zwischen 1930 und 1943," Ders., (Hg.), *Frieden - Einsichten für das 21. Jahrhundert* (Münster: LIT, 2009), 29.
41) Dietrich Bonhoeffer, DBW 6. *Ethik*, 269.
42) 위의 책, 273-274.
43) 위의 책, 260.

www.kci.go.kr

대리의 원칙과 함께 행위의 결과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44]

대리와 현실적합성에 기초한 책임적 행동은 폭력 사용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보편적인 규범을 파괴하기도 한다. 윤리적, 법적 규범을 위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적 행동은 규범을 위반하는 것과 위반에 대한 죄책을 지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죄책 수용(Schuldübernahme)은 무죄한 분이지만, 인간을 위해 인간의 죄책을 대신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근거로 삼고 있다.[45]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인간은 그와 마찬가지로 동료 인간을 위해 죄책을 짊어져야 한다.[46] 다만 인간은 그리스도처럼 다른 인간의 죄책이 아닌 동료 인간을 위해 실천에 옮긴 자기 행위에 대한 죄책만을 담당하게 된다.[47]

그러나 이러한 책임적 행동이 무조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범을 위반하고, 죄책을 수용할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할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자유는 인간의 타락과 그에 기초한 자율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 이전의 것에 해당한다.[48] 이 자유는 절대적인

---

44) 본회퍼는 근대성에 기초하고, 목적론을 강조하는 베버의 책임 윤리와 달리 신학적 관점에서 원칙과 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책임 이론을 전개하였다. 위의 책, 267.

45) 위의 책, 276.

46) 본회퍼는 인간의 양심이 죄책 수용의 실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하였다.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 동료 인간과 분열되었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도 분열되었다. 이때 생겨난 양심은 자기 자신과 일치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내적 현상이다. 그래서 양심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자율성을 추구하는 자기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심은 내적 법정(forum internum)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게 만든다. 본회퍼는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획득하게 된 해방된 양심(befreites Gewissen)만이 자기 지향성을 극복하고, 이웃을 위한 책임적 행동과 죄책 수용을 감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위의 책, 277-279, Dietrich Bonhoeffer, DBW 3. *Schöpfung und Fall*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89), 120.

47) Wolfgang Huber, *Dietrich Bonhoeffer. Auf dem Weg zur Freiheit* (München: C. H. Beck, 2019), 206.

48) Dietrich Bonhoeffer, DBW 6. *Ethik*, 216.

www.kci.go.kr

것은 아니지만, 경시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위해 존중받아야 한다. 자유에 근거한 책임적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책임적 행동은 일종의 모험(Wagnis)으로서 자기 자신과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상태에서 실행되어야 한다.[49]

본회퍼에게 시민적 용기는 이와 같은 책임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적 용기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태도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구체적 상황에 필요하고, 죄책을 감수해야 하는 대리 행위를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 속에서 실천하려는 책임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부정적 결과를 감수한 채 권위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옳고, 선한 목표를 추구하는 공적 용기라는 이해를 함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회퍼의 모색은 현대적 의미의 시민적 용기의 개념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IV. 시민적 용기와 법윤리적 노력

본회퍼는 이러한 사유의 틀을 바탕으로 시민적 용기를 나치 정권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의 덕으로 구체화하였다. 정치적 저항에 대한 그의 관심은 나치 정권이 권력을 획득한 이후로 계속 이어져왔다. 주목할 점은 당시 정치 권력과 법이 밀접히 결합된 형태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법은 나치 정권의 불의한 정책을 관철하는 강제성을 지닌 규범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본회퍼의 정치적 저항의 과정에서 정치 권력뿐 아니라 법에 대한 비판이 함께 이뤄졌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 법의 개선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회퍼에게 시민적 용기는 정치적 저항뿐 아니라 법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

49) 위의 책, 289.

www.kci.go.kr

다.

그러나 본회퍼가 법을 독자적인 탐구 주제로 삼은 것은 아니다. 근대 이후 법은 교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세상 영역에 속한다는 인식 속에서 개신교 신학의 관심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회퍼 역시 법을 정치 권력의 역할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만 주제화하였다.[50] 그는 루터의 인식에 기초하여 교회와 정치 권력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다른 형태의 정부라고 생각하였다.[51] 복음을 전해야 할 과업을 지니고 있는 영적 정부인 교회와 함께 세속 정부인 정치 권력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복음이 선포되고,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법은 무력과 함께 이 과제의 수행을 위한 도구에 해당한다.[52] 두 정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과업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내부 질서와 선포의 기능을 침해받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정치 권력과 법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이 연장 선상에서 법은 사실적합성의 영역으로 범주화됨으로써 궁극 이전의 것에 포함된다.[53] 따라서 법은 그 고유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결코 절대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하나님보다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을 받아 교정되어야 할 근원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54] 본회퍼는 법이 과도하게(Zuviel) 혹은 부족하게(Zuwenig) 기능할 경우를 문제 상황으로 간주하였다. 법이 교회와 같은 특정 사회 질서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거나 유대인과 같은 특정 집단의

50)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133.

51) Dietrich Bonhoeffer, "Die Kirche vor der Judenfrage," Ders., DBW 12. *Berlin 1932-193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7), 350.

52) Dietrich Bonhoeffer, DBW 6. *Ethik*, 59.

53) 위의 책, 271.

54) 위의 책, 360.

www.kci.go.kr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때 교회의 윤리적 성찰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55] 특히 법이 특정 집단을 보호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자를 양산할 때 이를 위한 교회의 대리 행위가 요구된다. 이러한 타자를 위한 행동은 정치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 피해자의 돌봄, 그 원인 해결을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구체화된다.[56] 이것은 결국 특정 법률에 대한 비판과 그 개선을 위한 실제적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본회퍼의 인식은 불의한 법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유대계 혈통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아리안 조항은 개신교 목회자에게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유대계 목회자의 수가 많지 않았고, 교회 내에서도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57] 이러한 상황에서 본회퍼는 『유대인 문제 앞의 교회』(Die Kirche vor der Judenfrage)라는 논문을 통해 정치 권력과 이 법률에 대한 비판을 감행하였다.[58] 그에 따르면 세례 받은 유대인은 비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원이다. 그래서 이들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아리안 조항은 교회의 내부 질서를 침범하고,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불의한 법률에 해당한다. 교회의 자유와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받는 이 상황을 교회는 신앙고백적 상황(status confessionis)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돌보며,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59]

이뿐 아니라 나치 정권은 유전병 환자와 불치병 환자의 돌봄에 많은

55) Dietrich Bonhoeffer, “Die Kirche vor der Judenfrage,” 352-353.
56) 위의 책, 353-354.
57) Heinz Eduard Tödt, *Theologische Perspektiven nach Dietrich Bonhoeff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3), 77.
58) Dietrich Bonhoeffer, “Die Kirche vor der Judenfrage,” 349-358.
59) 위의 책, 354.

www.kci.go.kr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를 합법화하였다. 인종주의, 우생학과 결합된 이 시도는 독일 국민의 순수성과 결속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정신 질환을 비롯한 유전적 질병을 가진 독일인에게 강제 불임을 시행하는 유전성 질병을 가진 후손의 방지를 위한 법률(Gesetz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이 1933년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1945년까지 36만 명의 생식 능력이 제거되었다.[60] 여기서 더 나아가 나치 정권은 1939년 8월부터 수천 명의 선천적 장애를 가진 3세 이하의 독일 아동들과 그해 9월부터는 정신 질환과 불치병을 앓고 있는 7만 명 이상의 독일 성인들을 안락사시켰다.[61] 이들 중 교회 시설에 살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락사 정책도 교회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회퍼는 『자연적 생명』(Das natürliche Leben)이라는 단편을 통해 정치 권력과 법률에 대한 신학적 비판을 전면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거나 생식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62] 하나님에 의해 세상 영역에 주어진 모든 자연적인 것은 피조된 후 타락한 궁극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절대화될 수 없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위상과 의미가 포착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이 존중받고, 보호받기를 원하신다.[63] 인간의 생명과 생식 활동은 자연적인 것으로서 제도적 개입을 통해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성을 지니고 있다.[64] 이러한 차원에서 나

60) Helmut Reihlen, "Vom Wert des Lebens. Karl und Dietrich Bonhoeffer im ethischen Gespräch," Traugott Jähnichen (Hg.), *Dietrich Bonhoeffer - Stationen und Motive auf dem Weg in den politischen Widerstand* (Münster: LIT, 2005), 61.

61) 위의 책, 63.

62) Dietrich Bonhoeffer, DBW 6. *Ethik*, 189-191.

63) 위의 책, 165-166.

64) 위의 책, 184-185, 209.

www.kci.go.kr

치 정권이 전개한 강제 불임법과 안락사 정책은 자연적인 것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회퍼는 법률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그 근본적 차원의 개선을 위한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도 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정치 권력이 법을 통해 피해자를 양산할 때 그 원인을 해결하는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그의 생각과 결부되어 있다. 고난당하는 자를 양산해낸 "폭군 같은 인간 멸시자"(tyrannischer Menschenverächter)[65]인 히틀러는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본회퍼는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1939년 미국으로 떠나기 전 그의 매제인 법률가 한스 폰 도나니(Hans von Dohnany)로부터 듣게 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귀국 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66] 이 계획은 도나니 외에 독일 국방군 정보국의 수장인 빌헬름 카나리스 제독(Wilhelm Canaris)과 그 부하인 한스 오스터 대령(Hans Oster)에 의해 수립된 것이다.

본회퍼의 가담은 그가 말한 시민적 용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민적 용기에 대한 구상을 담고 있는 『10년 후』는 그의 친구인 에버하르트 베트게(Eberhard Bethge) 외에 암살 계획에 참여 중인 도나니와 오스터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67] 이 글을 통해 본회퍼는 두 공모자에게 시민적 용기와 그에 따른 책임적 행동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본회퍼에게 히틀러 암살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행동이자 자유로운 책임을 실현하는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관계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행위이며, 주어진 상황에 필요한 폭력의 사용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적합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 행동

65) 위의 책, 72.

66) Christiane Tietz, *Dietrich Bonhoeffer. Theologe im Widerstand* (München: C. H. Beck, 2013), 90.

67) Eberhard Bethge, *Dietrich Bonhoeffer. Theologe, Christ, Zeitgenosse. Eine Biographie* (München: Kaiser, 1967), 885.

www.kci.go.kr

은 살인 금지라는 율법과 법규범을 위반하고, 그로 인한 죄책과 처벌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하다. 본회퍼는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 속에서 공적 이익을 위해 시민적 용기의 태도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고, 두 공모자도 동일한 관점으로 이 행동을 이해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본회퍼의 시도는 사실 국가 지도자의 살해와 모반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법질서에 큰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어겨 율법의 완성을 추구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율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68] 율법의 진정한 성취에 기여할 경우 율법 폐기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회퍼에게 암살 계획의 참여는 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69]

V. 나가는 말

시민성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덕이라는 기술적 의미뿐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이 가져야 할 덕이라는 규범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성의 함양은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시민적 용기는 시민 사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시민의 덕이다. 부정적 결과를 감수한 채 권위와 다수 의견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옳고, 선한 공적 목표를 지향하는 태도인 시민적 용기는 시민의 공론장 참여와 정치적 행동을 증진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시민적 용기의 수용과 구체화를 통해 그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본회

68) Dietrich Bonhoeffer, DBW 6. *Ethik*, 279, 298.
69) Wolfgang Huber, *Dietrich Bonhoeffer*, 179.

www.kci.go.kr

퍼의 구상은 이 과제의 수행에 큰 도움을 준다.

본회퍼는 시민적 용기의 신학적 토대를 제시하였다.[70] 그는 시민적 용기를 이 개념의 현대적 의미와 유사하게 권위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태도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구체적 상황에 필요하고, 죄책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를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 속에서 실천하려는 책임적 태도로 설명하였다. 본회퍼는 이러한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치적 저항에 힘썼고, 이 과정에서 법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 행동을 실천에 옮겼다. 그의 이론과 실천은 정치 영역뿐 아니라 법의 영역에서도 시민적 용기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시각을 가져다주었다.[71]

신학적 측면에서 시민적 용기의 개념을 규정하고, 법에 대한 시민적 용기의 필요성을 제기한 본회퍼의 구상은 더 나아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법윤리적 판단 기준의 정립에 공헌한다. 그에 따르면 고난당하는 자를 양산하는 법률은 불의한 법률이다. 고난당하는 자의 발생 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준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아래로부터의 관점(Blick von unten)을 통해 고난당하는 자의 상황을 관찰, 공감하고,[72] 시민적 용기를 기초로 그 법률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관심이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정 법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경시하고, 개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침해하는지 관찰하며, 그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빈곤층의 삶을 위협하는 법률의 개선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적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73]

---

70) 개신교 법윤리의 권위자인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는 본회퍼의 영향 속에서 시민적 용기를 민주사회와 법치국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덕으로 이해하였다.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223.

71) 위의 책, 488.

72) Dietrich Bonhoeffer, DBW 8. *Widerstand und Ergebung,* 38-39.

73)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232-234.

www.kci.go.kr

본회퍼의 모색은 법윤리적 노력의 방향 설정에도 기여한다. 그는 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폭력의 사용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이 인식은 고난당하는 자를 양산하는 나치 정권이라는 예외 상황에 적합한 것이다. 국가 지도자 살해와 모반을 통해 법질서 전반의 변혁을 의도한 본회퍼의 시도는 현대적 의미의 저항권 사상에 부합하지만,[74] 이 권리는 법체계 전체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구현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75]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형성되어 실효성과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법치국가의 법질서 안에서는 비폭력적 태도가 현실적합성을 지닌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특정 법률에 대해 공론장 참여를 통해 문제 제기와 비판에 힘쓰고, 시민불복종과 같은 비폭력 저항을 통해 그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법윤리적 노력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본회퍼의 이해를 통해 시민적 용기에 관한 신학적 체계를 구축하고, 법윤리적 판단 기준과 실천 방향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노력은 시민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적 용기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

74) 고재길, "디트리히 본회퍼의 사회윤리에 대한 소고," 「장신논단」 37(2010), 139-141.
75)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488.

www.kci.go.kr

참고문헌

강성영. “디트리히 본회퍼의 타자의 윤리의 신학적 토대와 오늘의 의미.”「신학연구」76(2020), 101-122.

고재길. “디트리히 본회퍼의 사회윤리에 대한 소고.”「장신논단」37(2010), 117-151.

김성수. “공적 교회의 개념과 책임적 과제 - 볼프강 후버의 교회론 연구.”「신학사상」185(2019), 149-174.

박선영, 목광수, 김승환, 성신형. “시민성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이해 분석과 기독교사회윤리적 답변.”「기독교사회윤리」48(2021), 63-105.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역.『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2008.

Plato. *Laches*. 한경자 역.『라케스』. 서울: 이제이북스, 2014.

Bethge, Eberhard. *Dietrich Bonhoeffer. Theologe, Christ, Zeitgenosse. Eine Biographie*. München: Kaiser, 1967.

Bonhoeffer, Dietrich. DBW 1.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86.

_____. DBW 3. *Schöpfung und Fall*.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89.

_____. DBW 6. *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2.

_____. DBW 8. *Widerstand und Ergebung. Briefe und Aufzeichnungen aus der Haf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8.

_____. “Die Kirche vor der Judenfrage.” Ders., DBW 12. *Berlin 1932-193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7, 349-358.

Feil, Ernst. “Zivilcourage nach Dietrich Bonhoeffer - eine Aufgabe der Individualethik?.” Ders., (Hg.). *Zivilcourage und demokratische Kultur*. Münster: LIT, 2002, 9-28.

Frey, Christofer. *Wege zu einer evangelischen Ethik. Eine Grundlegung*.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2014.

Habermas, Jürgen.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www.kci.go.kr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Frankfurt a. M.: Suhrkamp, 1994.

Huber, Wolfgang. *Folgen christlicher Freiheit. Ethik und Theorie der Kirche im Horizont der Barmer Theologischen Erklärung.*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85.

_____. *Kirche in der Zeitenwende. Gesellschaftlicher Wandel und Erneuerung der Kirche.* Gütersloh: Verlag Bertelsmann Stiftung, 1999.

_____.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_____. *Von der Freiheit. Perspektive für eine solidarische Welt.* München: C. H. Beck, 2012.

_____. *Dietrich Bonhoeffer. Auf dem Weg zur Freiheit.* München: C. H. Beck, 2019.

Jähnichen, Traugott. "Freie Verantwortlichkeit und Zivilcourage." Ders., (Hg.). *Dietrich Bonhoeffer - Stationen und Motive auf dem Weg in den politischen Widerstand.* Münster: LIT, 2005, 89-109.

Meyer, Gerd. "Was heiβt mit Zivilcourage handeln?." Ders., (Hg.). *Zivilcourage lernen. Analysen - Modelle - Arbeitshilfen.* Bonn: BPB, 2004, 22-40.

Ostermann, Änne. "Zivilcourage und Demokratie." Gerd Meyer (Hg.). *Zivilcourage lernen. Analysen - Modelle - Arbeitshilfen.* Bonn: BPB, 2004, 52-59.

Rawls, John. *Eine Theorie der Gerechtigkeit.* Frankfurt a. M.: Suhrkamp, 2014.

Reihlen, Helmut. "Vom Wert des Lebens. Karl und Dietrich Bonhoeffer im ethischen Gespräch." Traugott Jähnichen (Hg.). *Dietrich Bonhoeffer - Stationen und Motive auf dem Weg in den politischen Widerstand.* Münster: LIT, 2005, 59-74.

Reuter, Hans-Richard. "Vom christlichen Pazifismus zum aktiven Widerstand. Dietrich Bonhoeffers (Denk-)Weg zwischen 1930 und 1943." Ders., (Hg.). *Frieden - Einsichten für das 21. Jahrhundert.* Münster: LIT, 2009, 15-42.

Schliesser, Christine. "Zivilcourage - ein theologischer Begriff?." *Zeitschrift für evangelische Ethik.* 62(2018), 89-101.

Seubert, Sandra. "Zivilcourage als politische Tugend der Bürgergesellschaft."

www.kci.go.kr

Gerd Meyer (Hg.). *Zivilcourage lernen. Analysen - Modelle - Arbeitshilfen.* Bonn: BPB, 2004, 42-50.

Tietz, Christiane. *Dietrich Bonhoeffer. Theologe im Widerstand.* München: C. H. Beck, 2013.

Tödt, Heinz Eduard. *Theologische Perspektiven nach Dietrich Bonhoeff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3.

Von Soosten, Joachim. "Bürgertum, Bürgergesellschaft."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Kohlhammer, 2001, 226-228.

Weber, Max. "Politik als Beruf." Ders.,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Tübingen: Mohr Siebeck, 1958, 493-548.

논문투고일: 2021년 10월 23일
심사개시일: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05일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디트리히 본회퍼의 시민적 용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법윤리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퍼는 시민적 용기를 권위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태도이자 자유로운 책임을 실현하는 태도로 이해하였다. 그는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정치적 저항에 집중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에 대한 비판과 그 개선을 위한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도 하였다. 본회퍼의 이론과 실천은 정치 영역뿐 아니라 법의 영역에서도 시민적 용기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주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기획은 시민적 용기에 관한 신학적 체계의 구축과 법윤리적 판단 기준과 실천 방향의 정립에 도움을 준다. 이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노력은 시민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적 용기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디트리히 본회퍼, 시민성, 시민적 용기, 사회윤리, 법윤리, 책임

www.kci.go.kr

www.kci.go.kr